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약사법 시행령」,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알림

1. 귀 기관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.
2. 「약사법 시행령」,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을 '20.12.21.자로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'21.2.1.(월)까지 우리부 (약무정책과)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'이견 없음'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약사법 시행령,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.
2. 의견서 제출 양식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약사회장, 한국병원약사회장, 대한한약사회장, 한국약품유통협회장,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

주무관	문화목	기술서기관	강영아	약무정책과장	전결 2020.12.21.
협조자				윤병철	
시행	약무정책과-4913			접수	
우	30113	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	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		/ http://www.mohw.go.kr
전화번호	044-202-2491	팩스번호	044-202-3927	/ mhm8600@korea.kr	/ 비공개(5,6,7)